

지방자치론

1. 총평

이번 시험의 난이도는 평년과 유사한 수준이었습니다.

역시 지방자치법과 관련 법령들을 묻는 문제가 14문제 출제되면서, 지방자치론은 법령 문제를 대비한 공부가 되어있지 않으면 절대 고득점 할 수 없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다만, 최근의 까다로운 법령문제들도 기존의 기출문제 지문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으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론 시험이 누적되면서 지방자치법과 관련 법령들을 기반으로 한 문제들이 이미 다수 출제되어 현실적으로 중요 포인트에 있어서 완전히 새로운 문제들을 만들어 내기가 쉽지 않은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말하면 법령집을 기반으로한 기출문제의 꼼꼼한 정리가 지방자치론 고득점을 위해 유일하고도 확실한 대비책이라는 것이죠!

올해 또 있을 지방직 7급 시험에서는 더 나은 점수와 합격을 기원합니다.

— 신용한 드림 —

2. 출제영역분석

지방자치의 기초적 이해	3	지방자치와 주민의 참여	3
지방자치의 기본적 체계	4	지방자치의 재정	5
지방자치의 운영	4	정부 간 관계	1

3. 출제경향분석

기출 문제	18	기출변형 문제	1	신유형 문제	1
-------	----	---------	---	--------	---

4. 출제문제유형분석

말 바꾸기	짝찾기	내용 분류	개념	순서 연결	제도 및 이론비교	법령 문제
1	—	1	2	—	2	14

01 지방분권의 장점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역의 특수성과 실정에 부합하는 정책추진 및 행정수행에 적합
- ② 주민통제를 통한 책임행정 구현에 기여
- ③ 전국적·광역적 규모의 사무처리에 유리
- ④ 지방정부의 자치역량 제고

- 【해설】 ① [O] 지방분권은 지역별 특수성을 고려한 지역실정에 맞는 행정구현과 획일화로 인한 폐를 방지할 수 있다.
- ② [O] 지방분권은 주민통제를 통한 전제주의 방지의 기본수단으로써 작용한다.
- ③ [X] 전국적·광역적 규모의 사무처리에 용이한 것은 중앙집권의 장점이다.
- ④ [O] 지방분권은 지역주민에 대한 행정대응성과 지방정부의 자치역량을 제고시킨다.

▶ 올바른 지문

- ③ 중앙집권은 전국적·광역적 규모의 사무처리에 용이

【참고】 2019 compass 지방자치론 p.9~14

▶ ③

02 지방자치단체의 계층 구조에서 중층제의 장·단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중층제에서는 여러 지역에 걸쳐서 일어나는 행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광역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 ② 중층제에서는 기초자치단체 간 갈등을 광역자치단체가 효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 ③ 중층제에서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의 업무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으면 행정의 중복으로 인한 낭비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다.
- ④ 중층제에서는 기초자치단체의 의사가 중앙정부에 신속하게 전달될 수 있다.

- 【해설】 ④ [X] 기초자치단체의 의사를 중앙정부에 신속하게 전달하고, 의사전달의 왜곡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은 단층제의 장점이다. 중층제는 주민의 중앙정부에 대한 의사전달과 중앙행정의 주민에 대한 침투가 중간지방정부에 의해 왜곡될 수 있으며, 의사전달이 지연될 수 있다.

▶ 올바른 지문

- ④ 단층제에서는 기초자치단체의 의사가 중앙정부에 신속하게 전달될 수 있다.

summary | 중층제의 장단점

장 점	• 공공기능의 분업적 수행을 가능케 함. • 기초지방정부에 대해 지역사정에 밝은 상급지방정부가 일차적 감독기관의 역할을 함으로써 국가의 감독기능을 원활하게 함. • 상급지방정부가 국가의 강력한 간섭과 감독으로부터 기초지방정부를 보호함으로써 민주주의 원리의 확산과 유지에 도움이 됨.
단 점	• 이중행정으로 인한 불필요한 낭비와 지연이 발생 할 수 있음. • 행정책임 확보의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음. • 주민의 중앙정부에 대한 의사전달 등이 중간지방정부에 의해 왜곡될 수 있음. • 중앙정부와 상급지방정부에 의한 이중감독과 이중규제가 행해질 가능성

【참고】 2019 compass 지방자치론 p.43

▶ ④

03 지방자치의 구성 요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방자치는 일정한 지역 혹은 구역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행위이다.
- ② 자치권에는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치조직권, 자치사법권 등이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에 부여된 자치권 중 자치사법권은 우리나라에서 인정되지 않는다.
- ④ 자치권 부여와 관련하여 자치권의 내용은 어느 국가나 동일하게 부여되어 있다.

【해설】 ④ [X] 지방자치권을 구성하는 핵심적 사항은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조직권, 자치재정권, 자치사법권 등으로 나라마다 자치권의 부여와 내용은 서로 다르다. 우리나라는 이 중 자치사법권은 부여되어 있지 않다.

▶ 올바른 지문

- ④ 자치권 부여와 관련하여 자치권의 내용은 국가마다 다르다.

【참고】 2019 compass 지방자치론 p.63

▶ ④

04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와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그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 ② 재의한 결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된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상 집행불가능한 의결이라고 인정되면 그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 ④ 지방의회가 비상재해로 인한 시설의 응급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줄이는 의결을 할 경우에도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해설】 ① [O] 지방자치법 제107조 제1항

동법 제107조 【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한 재의요구와 제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그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 ② [X]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된다.

동법 제107조 【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한 재의요구와 제소】 ② 제1항의 요구에 대하여 재의한 결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된다.

- ③ [O] 동법 제108조 제1항

동법 제108조 【예산상 집행 불가능한 의결의 재의요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예산상 집행할 수 없는 경비를 포함하고 있다고 인정되면 그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 ④ [O] 동법 제108조 제2항 제2호

동법 제108조 【예산상 집행 불가능한 의결의 재의요구】 ② 지방의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를 줄이는 의결을 할 때에도 제1항과 같다.
1.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경비
2. 비상재해로 인한 시설의 응급 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 올바른 지문

- ② 재의한 결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된다.

【참고】 2019 compass 지방자치론 p.66, 102 / 부속법령집 p.66

▶ ②

| 법령 문제 |

05

「지방공기업법」상 지방공기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기업 설립에 대한 승인권이 있다.
 ② 보유차량이 30대 이상인 자동차 운송사업을 지방자치 단체가 직접 경영할 때는 지방공기업법상의 지방직영기업으로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직영기업을 설치·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공기업법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규칙으로 기본사항을 정해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법이 정하는 지방공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기본적인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장의 규칙으로 정하여야 한다.

【해설】 ① [X] 「지방공기업법」상 지방공기업의 설립은 조례로 정하며, 특히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설립은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 사항이 아닌 협의사항이다.

지방공기업법 제49조 【설립】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를 설립하기 전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76조 【설립·운영】 ② 공단의 설립·운영에 관하여는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사"는 "공단"으로, "사장"은 "이사장"으로, "사채"는 "공단채"로 본다.

② [O] 보유차량 30대 이상(동법 시행령) 자동차운송사업은 지방직영기업으로 한다.

동법 제2조 【적용 범위】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그에 부대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제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업(이하 "지방직영기업"이라 한다)과 제3장 및 제4장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사업에 대하여 각각 적용한다.

4. 자동차운송사업

동법 시행령 제2조 【지방직영기업의 범위】 ①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업"이란 다음 각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자동차운송사업 : 보유차량 30대이상

③ [X]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직영기업의 설치·운영의 기본사항은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동법 제5조 【지방직영기업의 설치】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직영기업을 설치·경영하려는 경우에는 그 설치·운영의 기본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④ [X] 지방자치단체는 공사를 설립하는 경우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해야 한다.

동법 제49조 【설립】 ② 지방자치단체는 공사를 설립하는 경우 그 설립, 업무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 올바른 지문

- ①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기업 설립에 대한 승인권이 없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직영기업을 설치·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공기업법의 규정에 따라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법이 정하는 지방공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참고】 2019 compass 지방자치론 p.113~115 / 부속법령집 94~96

▶ ②

주민의 지방선거 선거권과 피선거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은 없지만 3년 이상 주민등록표에 올라 있는 재외국민은 지방선거의 선거권이 있다.
- ②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의 국민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은 지방선거의 선거권이 있다.
- ③ 지방의회 의원의 피선거권 연령 요건은 25세 이상, 지방자치단체장의 피선거권 연령 요건은 30세 이상이다.
- ④ 지방선거에 피선거권을 갖기 위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는 기간은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이다.

【해설】 ①, ② [X] 재외국민이란 국외에 거주하고 있으나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으로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5조 【선거권】 ② 19세 이상으로서 제37조제1항에 따른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구역에서 선거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이 있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 3호(재외국민)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주민등록표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올라 있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③ [X], ④ [O]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으로서 25세 이상의 국민은 그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피선거권이 있다.

동법 16조 【피선거권】 ③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으로서 25세 이상의 국민은 그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피선거권이 있다. 이 경우 60일의 기간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설치·폐지·분할·합병 또는 구역변경(제2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구역변경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중단되지 아니한다.

▶ 올바른 지문

- ① 선거일 현재 19세 이상으로 선거인명부작성일을 기준으로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 3호(재외국민)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주민등록표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올라 있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재외국민은 지방선거의 선거권이 있다.
- ② 선거일 현재 19세 이상으로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은 지방선거의 선거권이 있다.
- ③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피선거권 연령 요건은 25세 이상이다.

07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학자는 랭그로드(G. Langrod)이다.
- ② ‘지방자치가 민주주의의 훈련의 장이다’라는 말은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의 관계가 긍정적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말한다.
- ③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의 관계부정설을 제기하는 학자는 ‘현대사회는 민주적 지방분권보다 능률적 중앙집권화가 더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 ④ 프랑스 학자 토크빌(A. de Toqueville)도 미국 민주주의론(Democracy in America)저서에서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해설】 ① [X] 랭그로드(Langrod)는 무랭(Moulin)과 함께 지방자치가 지닌 민주시민 교육의 기능에 대해 강한 비판론을 제기하였다. 이들은 지방자치를 통해 오히려 지역적 이익을 지나치게 중시하는 배타주의와 분리주의를 배울 수 있다고 주장하고 중앙집권적인 체제가 더욱 좋은 민주시민 교육의 장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 올바른 지문

- ①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의 관계를 부정적으로 평가한 학자는 랭그로드(G. Langrod)이다.

【참고】 2019 compass 지방자치론 p.10~12

▶ ①

08

외국의 지방자치 발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미국은 닉슨행정부와 레이건행정부를 거쳐 ‘신연방제’의 이름하에 연방의 권한과 책임을 축소하여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제약하였다.
- ② 일본은 1990년대 「지방분권추진법」 제정과 지방분권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지방분권정책을 추진하였다.
- ③ 프랑스의 근대적 지방제도는 영국보다 먼저 시작했으며 그에 따라 분권 및 자치 기능 역시 영국에 비해 더욱 발달하였다.
- ④ 뉴딜 이후 지방정부가 처리해야 할 문제들이 복잡해지고 지방정부의 전문성이 강조됨에 따라 전문가가 강조되고 시장의 권한이 약화되는 약시장-의회제를 채택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해설】 ① [X] 1981년 출범한 레이건 행정부는 닉슨이 주창한 ‘신연방제’의 이름아래 연방의 권한과 책임을 축소하고 지방정부의 권한과 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② [O] 일본은 1995년 5월 「지방분권추진법」이 제정되었고, 지방분권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강력한 지방분권정책을 추진하였다.
 ③ [X] 근대적 지방제도의 성립은 사실상 영국(1835년)보다 프랑스(1789년)가 먼저 시작했으나 나폴레옹의 강력한 집권정책으로 분권 및 자치 기능은 늦게 발전됐다.
 ④ [X] 뉴딜 이후 지방정부의 기능이 확대되고, 리더십과 전문성을 강조하는 지방정부가 요구됨에 따라 대도시 지역의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시장이 보다 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강시장-의회제를 채택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 올바른 지문

- ① 미국은 닉슨행정부와 레이건행정부를 거쳐 '신연방제'의 이름하에 연방의 권한과 책임을 축소하고 지방정부의 권한과 자율성을 강화시켰다.
- ③ 프랑스의 근대적 지방제도는 영국보다 먼저 시작했으나 그에 따른 분권 및 자치 기능은 영국에 비해 늦게 발달하였다.
- ④ 뉴딜 이후 지방정부가 처리해야 할 문제들이 복잡해지고 지방정부의 전문성이 강조됨에 따라 전문가가 강조되고 시장의 권한이 강화되는 강시장-의회제를 채택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참고】 2019 compass 지방자치론 p.20~24

▶ ②

| 법령 문제 + 말 바꾸기 |

09

「지방재정법」상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지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행정안전부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자력으로 재정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건전화계획을 3년간 이행하였음에도 재정위험수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 이하로 악화된 경우, 행정안전부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 ③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30일 이상 지급하지 못한 경우 행정안전부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 ④ 상황일이 도래한 채무의 원금 또는 이자에 대한 상환을 지방자치단체가 90일 이상 이행하지 못한 경우 행정안전부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해설】 ①, ②, ③ [O], ④ [X] 지방재정법 제60조의 3 제1항

동법 제60조의3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지정 및 해제】 ① 행정안전부장은 지방자치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자력으로 그 재정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은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1. 제55조의2에 따라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가 제55조의3에 따른 재정건전화계획을 3년간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된 때부터 3년이 지난 날 또는 그 이후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험 수준이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된 때보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 이하로 악화된 경우
2.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30일 이상 지급하지 못한 경우
3. 상황일이 도래한 채무의 원금 또는 이자에 대한 상환을 60일 이상 이행하지 못한 경우

▶ 올바른 지문

- ④ 상황일이 도래한 채무의 원금 또는 이자에 대한 상환을 지방자치단체가 60일 이상 이행하지 못한 경우 행정안전부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참고】 2019 compass 지방자치론 p.191 / 부속법령집 p.80

▶ ④

10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 ② 주민의 의무부과 사항에 대해 법률의 위임을 받아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 ③ 서울시 자치구 조례는 서울특별시 조례를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 ④ 서울특별시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해설】 ① [×], ② [○] 지방자치법 제22조

지방자치법 제22조 【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③ [○] 지방자치법 제24조

동법 제24조 【조례와 규칙의 입법한계】 시·군 및 자치구의 조례나 규칙은 시·도의 조례나 규칙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 지방자치법 제23조

동법 제23조 【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 올바른 지문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참고】 2019 compass 지방자치론 p.64 / 부속법령집 p.29



11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기>

- ㄱ. 서울특별시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쳐야 한다.
- ㄴ.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기초지방자치단체 간의 분쟁은 지방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 ㄷ. 서울특별시장은 사무위탁의 당사자가 시·도나 그 장이면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ㄹ.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이 공익을 현저히 침해하여 조속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더라도 반드시 당사자의 신청이 있어야 조정할 수 있다.

① ㄱ

② ㄴ, ㄷ

③ ㄱ, ㄴ, ㄷ

④ ㄱ, ㄴ, ㄷ, ㄹ

【해설】 ㄱ [O] 지방자치법 제152조

지방자치법 제152조【행정협의회회의 구성】 ②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

ㄴ [X]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기초지방자치단체 간의 분쟁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지방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동법 제149조【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 등의 설치와 구성 등】 ②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심의·의결한다.

1. 시·도 간 또는 그 장 간의 분쟁
2. 시·도를 달리하는 시·군 및 자치구 간 또는 그 장 간의 분쟁
3. 시·도와 시·군 및 자치구 간 또는 그 장 간의 분쟁
4. 시·도와 지방자치단체조합 간 또는 그 장 간의 분쟁
5. 시·도를 달리하는 시·군 및 자치구와 지방자치단체조합 간 또는 그 장 간의 분쟁
6. 시·도를 달리하는 지방자치단체조합 간 또는 그 장 간의 분쟁

ㄷ [X] 서울특별시장은 사무위탁의 당사자가 시·도나 그 장이면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시·도지사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동법 제151조【사무의 위탁】 ①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은 소관 사무의 일부를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무 위탁의 당사자가 시·도나 그 장이면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군 및 자치구나 그 장이면 시·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ㄹ [X]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이 공익을 현저히 저해하여 조속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직권으로도 조정이 가능하다.

동법 제148조【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분쟁조정】 ①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상호 간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이 달라 다툼(이하 "분쟁"이라 한다)이 생기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조정(調整)할 수 있다. 다만, 그 분쟁이 공익을 현저히 저해하여 조속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당사자의 신청이 없어도 직권으로 조정할 수 있다.

▶ 올바른 지문

- ㄴ.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기초지방자치단체 간의 분쟁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 ㄷ. 서울특별시장은 사무위탁의 당사자가 시·도나 그 장이면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ㄹ.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이 공익을 현저히 저해하여 조속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당사자의 신청이 없어도 직권으로 조정할 수 있다.

12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결처분(先決處分)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중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으로서 지방의회에서 의결이 지체되어 의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선결처분을 할 수 있다.
- ② 선결처분은 지체 없이 지방의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지방의회에서 선결처분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 그 선결처분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선결처분이 승인을 받지 못하면 15일 전까지 재승인을 받아야 하고, 관련 사항을 지체 없이 공고해야 한다.

【해설】 ④ [X] 선결처분은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승인을 받지 못하면 그 선결처분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하며, 관련 사항을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법 제109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결처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의원이 구속되는 등의 사유로 제64조에 따른 의결정족수에 미달하게 될 때를 말한다)와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중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으로서 지방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지방의회에서 의결이 지체되어 의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선결처분(先決處分)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선결처분은 지체 없이 지방의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지방의회에서 제2항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 그 선결처분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이나 제3항에 관한 사항을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 올바른 지문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선결처분이 승인을 받지 못하면 그 선결처분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하고, 관련 사항을 지체 없이 공고해야 한다.

13

「지방재정법」상 지방채의 발행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방채는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발행할 수 없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채를 발행하려면 재정 상황 및 채무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③ 지방채 발행 한도액 범위더라도 외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받은 범위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해설】 ① [O] 지방재정법 제11조의2

지방재정법 제11조의2 【지방채 발행의 제한】 지방채는 이 법과 다음 각 호의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발행할 수 없다.

②, ③ [O] 지방재정법 제11조 제2항

동법 제11조 【지방채의 발행】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하려면 재정 상황 및 채무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다만, 지방채 발행 한도액 범위더라도 외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X]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국회 X)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 받은 범위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동법 제11조 【지방채의 발행】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받은 범위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제2항에 따른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 올바른 지문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받은 범위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14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에서 제시된 일반행정 운영상의 특례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행정안전부장관이 서울특별시의 지방채 발행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서울특별시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국무총리의 조정을 거쳐야 한다.
- ③ 서울특별시 소속 국가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권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행사한다.
- ④ 서울특별시 소속 공무원 등에 대한 서훈의 추천은 「상훈법」 제5조 1항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장이 한다.

【해설】 ①, ②, ④ [O]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7조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 제4조 【일반행정 운영상의 특례】 ①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채정법」 제1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지방채 발행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법」 제17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국무총리의 조정을 거쳐야 한다.

⑦ 서울특별시 소속 공무원 등에 대한 서훈(敍勳)의 추천은 「상훈법」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장이 한다.

- ③ [X] 서울특별시 소속 국가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권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서울특별시장(행정안전부장관 X)이 행사한다.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 제4조 【일반행정 운영상의 특례】 ⑤ 서울특별시 소속 국가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8조제1항·제4항 및 제82조에 따른 소속 장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서울특별시장이 행사하며, 이와 관련된 행정소송의 피고는 같은 법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장이 된다.

▶ 올바른 지문

- ③ 서울특별시 소속 국가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권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서울특별시장이 행사한다.

15

서울특별시 의회의 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서울특별시 의회는 14일의 범위에서, 자치구 의회는 9일의 범위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 ② 서울특별시 의회가 요구하더라도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서울특별시장이 아닌 관계공무원이 출석·답변할 수 있다.
- ③ 서울특별시 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 없이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④ 서울특별시는 시의회가 감사결과 시정을 요구하면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해설】 ① [O], ③ [X] 서울특별시 의회는 14일의 범위에서, 자치구 의회는 9일의 범위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특정 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① 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도에서는 14일의 범위에서,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9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O]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동법 제42조 【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문응답】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답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④ [O] 지방자치법 제41조의2 제3항

동법 제41조의2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 보고에 대한 처리】 ③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은 제2항에 따라 시정 요구를 받거나 이송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올바른 지문

- ③ 서울특별시 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다.

summary | 행정사무감사권 vs 행정사무조사권

구 분	행정사무감사권	행정사무조사권
실 시	매년 1회 : 시·도는 14일, 시·군·자치구는 9일의 범위 내 실시	본회의 의결로서 실시
내 용	행정사무처리 전반	특정한 사안
절 차	매년 정례회의 회기 내에 행함.	의원의 1/3 이상의 발의로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행함.

「지방교부세법」상 지방교부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추가경정예산에 의하여 지방교부세의 재원인 국세가 늘거나 줄면 지방교부세도 함께 조절하여야 한다.
- ② 기준재정수입액은 기준세율로 산정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보통세와 목적세 수입액으로 하며, 기준세율은 지방세법에 규정된 표준세율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세율로 한다.
- ③ 지방교부세는 1년을 4기(期)로 나누어 교부한다. 다만, 특별교부세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④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특별교부세를 교부할 수 있다.

【해설】 ① [O] 지방교부세법 제5조 제2항

지방교부세법 제5조 【예산 계상】 ② 추가경정예산에 의하여 교부세의 재원인 국세(國稅)가 늘거나 줄면 교부세도 함께 조절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가 줄어드는 경우에는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다음 연도까지 교부세를 조절할 수 있다.

- ② [X] 기준재정수입액은 기준세율로 산정한 해당 지방자치단체 보통세(목적세 ×) 수입액으로 하며, 지방세법에 규정된 표준세율의 100분의 80(100분의 70 ×)에 해당하는 세율로 한다.

동법 제8조 【기준재정수입액】 ① 기준재정수입액은 기준세율로 산정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보통세 수입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기준세율은 「지방세법」에 규정된 표준세율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세율로 한다.

- ③ [O] 지방교부세법 제10조

동법 제10조 【교부 시기】 교부세는 1년을 4기(期)로 나누어 교부한다. 다만, 특별교부세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④ [O] 지방교부세법 제9조

동법 제9조 【특별교부세의 교부】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특별교부세의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심사하여 특별교부세를 교부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특별교부세를 교부할 수 있다.

▶ 올바른 지문

- ② 기준재정수입액은 기준세율로 산정한 해당 지방자치단체 보통세 수입액으로 하며, 기준세율은 지방세법에 규정된 표준세율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세율로 한다.

17 「주민투표법」상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는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기〉	
ㄱ. 법령에 위반되거나 재판중인 사항	
ㄴ.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또는 사무에 속하는 사항	
ㄷ.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회계·계약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ㄹ. 행정기구의 설치·변경에 관한 사항	
ㅁ. 공무원의 인사·정원 등 신분과 보수에 관한 사항	

- ① ㄱ, ㄴ ② ㄱ, ㄴ, ㄷ
 ③ ㄱ, ㄴ, ㄷ, ㄹ ④ ㄱ, ㄴ, ㄷ, ㄹ, ㅁ

【해설】 ㄱ, ㄴ, ㄷ, ㄹ, ㅁ [O] 주민투표법 제7조 제2항

주민투표법 제7조 【주민투표의 대상】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다.

1. 법령에 위반되거나 재판중인 사항
2.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또는 사무에 속하는 사항
3.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회계·계약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과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분담금 등 각종 공과금의 부과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4. 행정기구의 설치·변경에 관한 사항과 공무원의 인사·정원 등 신분과 보수에 관한 사항
5. 다른 법률에 의하여 주민대표가 직접 의사결정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는 공공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다만,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가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동일한 사항(그 사항과 취지가 동일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주민투표가 실시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항

【참고】 2018 compass 지방자치론 p.140 / 부속법령집 p.16

▶ ④

18 지방정치의 권력구조에 관한 이론적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다원론에서는 지방정부와 지역사회의 영향력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으며, 권력을 나누어 가진 다수의 집단이 경쟁하고 협력하면서 공동의 합의점을 찾아나간다.
 ② 레짐이론은 다양한 형태의 지배연합 내지는 레짐이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한다.
 ③ 스톤(Stone)에 의하면 레짐이론에서 레짐이란 '지배적인 의사를 결정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함께 형성하는 비공식적 연합'으로 정의된다.
 ④ 헌터(F. Hunter)와 몰로치(H. Molotch)는 엘리트론적 관점에서 지역사회의 권력이 지역의 경제엘리트를 중심으로 형성된다고 주장하였다.

【해설】 ② [X] 레짐이론은 어떤 세력이나 집단이 지역사회와 지방정부를 주도한다고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형태의 지배연합 내지는 레짐이 존재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 올바른 지문

② 레짐이론은 다양한 형태의 지배연합 내지는 레짐이 존재할 수 있음을 설명한다.

【참고】 2018 compass 지방자치론 p.120~123

▶ ②

19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에서 각 단위 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轉用)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 결과 폐지되거나 감액된 지출항목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예산은 그 내용의 기능별·사업별 또는 성질별로 주요항목 및 세부항목으로 구분한다.
- ④ 예산은 예산총칙,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채무부담행위 및 명시이월비(明示移越費)를 총칭한다.

【해설】 ① [O] 지방재정법 제49조 제1항

지방재정법 제49조 【예산의 전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轉用)할 수 있다.

② [O] 지방재정법 제43조 제3항

동법 제43조 【예비비】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 결과 폐지되거나 감액된 지출항목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다.

③ [X]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예산은 그 내용의 성질과 기능을 고려하여 장(章)·관(款)·항(項)으로 구분한다. 그 내용의 기능별·사업별 또는 성질별로 주요항목 및 세부항목으로 구분하는 것은 세출예산이다.

동법 제41조 【예산의 과목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예산은 그 내용의 성질과 기능을 고려하여 장(章)·관(款)·항(項)으로 구분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은 그 내용의 기능별·사업별 또는 성질별로 주요항목 및 세부항목으로 구분한다. 이 경우 주요항목은 분야·부문·정책사업으로 구분하고, 세부항목은 단위사업·세부사업·목으로 구분한다.

④ [O] 지방재정법 제40조 제1항

동법 제40조 【예산의 내용】 ① 예산은 예산총칙,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채무부담행위 및 명시이월비(明示移越費)를 총칭한다.

▶ 올바른 지문

③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은 그 내용의 기능별·사업별 또는 성질별로 주요항목 및 세부항목으로 구분한다.

〈보기〉는 「지방교부세법」상 지방교부세에 대한 설명이다.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보기〉			
• 지방교부세의 재원은 해당 연도의 내국세 총액의 (㉠)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및 안전시설 현황,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으)로 정한다.			
• 지역 현안에 대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 특별교부세 재원의 (㉢)에 해당하는 금액을 특별교부세로 교부한다.			
• 부동산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에 (㉤) 교부하여야 한다.			

	㉠	㉡	㉢	㉤
①	1천분의 1,924	대통령령	100분의 50	전액
②	1만분의 1,924	조례	100분의 50	일부
③	1만분의 1,924	대통령령	100분의 40	전액
④	1천분의 1,924	조례	100분의 40	일부

【해설】 ㉠ 지방교부세의 재원은 해당 연도의 내국세 총액의 1만분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지방교부세법 제4조 【교부세의 재원】 ① 교부세의 재원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해당 연도의 내국세(목적세 및 종합부동산세,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20 및 다른 법률에 따라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세목의 해당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총액의 1만분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

㉡ 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및 안전시설 현황,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동법 제9조의4 【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 ② 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및 안전시설 현황, 소방 및 안전시설 투자 소요, 재난예방 및 안전강화 노력,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역 현안에 대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 특별교부세 재원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특별교부세로 교부한다.

동법 제9조 【특별교부세의 교부】 ① 특별교부세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부한다.

1.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지역 현안에 대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 특별교부세 재원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

㉤ 부동산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에 전액 교부하여야 한다.

동법 제9조의3 【부동산교부세의 교부】 ① 부동산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에 전액 교부하여야 한다.